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찬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7
----------	----

발의연월일: 2019년 1월 14일

발 의 자: 박찬원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용어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정비하여 용어사용의 통일을 기하고, 그간 개정된 근거법령명과 잘못된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폐질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정비하여 용어사용의 통일을 기함(안 제2조제4호)
- 나. 개정된 근거법령명 정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
- 다.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19. 1. 3 ~ 1. 15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5조”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로, “평창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및”을 “평창군의회위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으로,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을 “보상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을 “란 평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를 “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를 “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14일이상”을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 : 지방의원 해당연도 회기수당”을 “경우: 도의원 해당연도 회기수당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 : 지방의원”을 “경우: 도의원”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경우 :”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 : 사망당시”를 “경우: 사망 당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년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1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평창군의회의회장”을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평창군의회의회장”으로,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5조의 규정에 따라 <u>평창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직무"라 함은 <u>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u></p> <p>2. "의정활동비"란 <u>함은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말한다.</u></p> <p>3. "유족"이라 함은 <u>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 <u>평창군의회위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 ----- <u>보상금</u> ----- ----- -----.</u></u></p> <p>제2조(정의) ----- ----- <u>각 호</u>----- --.</p> <p>1. ---<u>란 평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 ----- ----- -----.</u></p> <p>2. "의정활동비"란 「<u>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u></p> <p>3. ---<u>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 -----</u></p>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상해”라 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총무처 훈령)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 사람을 -----

-----.

4. ---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상해등급 -----
-----.

5. “상해”란 -----

----- 14일 이상-----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
----- 각 호-----
-----.

1. -----

의 경우 : 지방의원 해당연도 회기수당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지방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가. ~ 하. (생략)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1년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

- 경우: 도의원 해당연도 회기수당의 -----

2. -----
경우: 도의원 -----

-- 각 목-----

가. ~ 하. (현행과 같음)

3. -----
경우: -----.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 각 호-----.

1. -----
경우: 사망 당시-----

2. -----
경우: -----

② -----
----- 1년 이내-----

-----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평창군의회 의장-----

----- 평창군수(이하 "군수"

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 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창군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보상심의회 회의) ①·② (생략)

③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한다)-----.

----- 평창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 기

간 내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 중-----

-----.

제9조(보상심의회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5일 이내-----

-----.

범위-----

-----.

<p>제10조(간사) ① (생략)</p> <p>②간사는 <u>소속공무원중</u>에서 군수가 임명한다.</p> <p>제11조(수당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소속 공무원 중</u>----- -----.</p> <p>제11조(수당등) ----- ----- ----- <u>범위</u>----- ----- -----.</p>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